#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49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 박지혜・이소영・박정현

위성곤 • 염태영 • 한정애

전현희 • 권향엽 • 송재봉

이용우 • 윤준병 • 김성환

박지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석탄화력발 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 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2038년까지 12기를 양수, 수 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점, 최근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가속화된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의 계획보다도 조기에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불가피하

게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 전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지역경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 연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해당 목표의 이행을 위해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 운 전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바.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 14조).
- 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 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 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중이었던 지역으로서 해당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 한 지역을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운영을 중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 4.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 5.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 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6.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 다.
- 7.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8. "신·재생에너지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석 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국가 목표 연도와함께 연도별 석탄화력발전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촉진하여야 하며, 연도별 석탄화력발전량 감축목표의 이행,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위한 우대 조치의 시행과 해당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도별 석탄화력발전량 감축목표의 이행 점검 결과
- 2. 조기 폐지 결정에 대한 우대조치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 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변화
- 4.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및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 생활 향상 대책
- 7.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감축 목표의 설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도 시행계획)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 및 연차별 이행실적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성과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제8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정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 · 도지사

- 3.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중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대체산업 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①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 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 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정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의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본다.

#### 제3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 제10조(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대체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체산업의육성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내용 및 지원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각 호의 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및 관련 산업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 제14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지원사업)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 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 입금
  - 6. 지원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지원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용도)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지원사업
  - 2.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 성을 위한 지원사업
  -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 지원사업
  -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지원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17조(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지원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을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